

9.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施行令(案)

立法豫告 1990. 8. 4.

1. 제정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공업의 적정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과 조직
- 심의회는 공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국가공업단지의 지정,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승인, 공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기준, 개별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개발입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심의회는 위원장(경제기획위원장관), 부위원장(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12개부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함.

합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12개부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함.

나. 공업입지 개발지침의 작성

- 공업입지 개발지침은 지역간 균형있는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기간별로 공업단지의 유형별·제조업종별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건설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침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침의 내용에 인력수급, 지가 안정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공업단지의 지정

-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공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
- 3이상의 기업이 지정신청한 공업단지

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도록 함.

공업단지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에게 공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거쳐 공업단지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공단지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라. 공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지정해제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형
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재식
등 행위는 공업단지 지정목적과 사업시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군
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국가공단은 5년,
지방공단은 3년, 농·공단지는 2년안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
록 함.

마.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개발기본방향,
구역의 범위,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주요시설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
도록 정함.

수립된 기본계획은 이를 고시한 후 시
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
반인에게 열람을 하도록 함.

바. 사업시행자의 지정

-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를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특별시 및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 함.
- 입주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계획상 민간개발을 하도록 정한 경우, 잔여지에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및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함.

사. 협동개발의 시행

- 공단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동개발시행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협동개발 참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실시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농공단지는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업단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보상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시설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비용산출근거와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차. 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때는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개발된 토지 등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

카. 개발토지 등의 인계·분양

- 사업시행자는 개발토지·시설 등을 관리기관에 인계할 때에는 인계·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할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계획서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또는 승인)한 후 그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조정을 한 후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도록 함.

타. 분양가격의 결정기준

-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용지 이외의 지원시설용지나 주택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나 이주택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각각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용도에 따라서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성원가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용역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적정이윤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보상비 합계액의 10/100 이내에서 해당 공업단지의 입주수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정하도록 함.

파. 개별입지지정 및 개발

- 개별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장·군수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입지의 지정승인 및 개발을 하도록 함.

- 개별입지의 허용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용도지역변경권한과 연계하여 10만㎡(약 3만평) 이하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입지계획과 전화 500-28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